

# 학교법인 상산학원

## 제278회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인	재적이사	8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	2인

1. 회의소집통지일 : 2018년 6월 29일
2. 회의일시 : 2018년 7월 7일 11:00~13:00
3. 회의장소 : 모산빌딩 8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2)
4. 이사정수 : 8명
5. 재적이사 : 8명
6. 참석자 : 이사장 홍성대, 이사 신철순, 김성기, 이현구, 박삼옥, 전창후(6명)
7. 결석자 : 이사 김성길, 홍상옥(2명), 감사 고학용, 엄상섭(2명)
8. 안건  
  - (1) 안건 제1호 : 2018학년도 2학기 신규 교원 공개채용에 관한 사항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안)
    - 세부안건(1) : 공개채용 전형의 방법
    - 세부안건(2) : 전형의 절차 및 평가
    - 세부안건(3) : 공개채용 전형위원회의 구성
  - (2) 안건 제2호 : 신입학 전형 중 '25% 내외 지역인재선발'에 관한 심의(안)
9. 회의내용  
이사장 홍성대 :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법인실장의 성원 보고와 함께 이사장의 인사말씀이 있은 다음 제277회 이사회 회의록을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 없이 의결하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이미 1주일 전에 각 임원님께 회의 서류를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안건 제1호 '2018학년도 2학기 신규 교원 공개채용에 관한 사항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법인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 법인실장 김연수 : 공개채용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4조의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및 본 법인 정관 제50조에 의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세부안건(1) 공개채용 전형의 방법, 세부안건(2) 전형의 절차 및 평가, 세부안건

간 서 명	이사장	이사	이사
	홍성대	김철순	박삼옥

(3) 공개채용 전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심의하였습니다.(관련내용에 대해 회의 서류를 보면서 상세히 설명하다)

이 사 신철순 : 회의 서류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절차나 내용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 김성기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홍성대 : 신철순 이사의 동의와 김성기 이사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참석 임원 전원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그럼 제1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2호 안건 '신입학 전형 중 25% 내외 지역인재선발에 관한 심의(안)' 을 상정합니다. 의견을 나누기 전에 '25% 내외 전북인재'를 선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산고등학교는 2002년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한 후 2003학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첫 자사고 신입생을 선발하였습니다. 1차 연도에는 타시도(전북이외 지역) 학생비율이 38%, 2차 연도에는 49%, 3차 연도에는 75%로 해가 거듭될수록 타시도 학생의 비율이 급증하였고, 이러한 추세라면 타시도 학생 비율이 90%를 훌쩍 넘어 지역인재양성에 기여해보겠다는 당초의 건학의 뜻이 무너지겠다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사회의 뜻을 담아 전북지역의 학생을 25% 내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에게 통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7학년도부터 현재까지 25% 내외의 전북지역 인재들을 선발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한 용인외대부고의 경우 입학정원의 30%를 특별전형으로 용인시 학생을 할당하는 조건으로 경기도 용인시가 학교 개교에 필요한 건축 및 교육설비 비용으로 약 458억원을 지원하였고, 각종 인·허가 사항을 협조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산고는 이러한 지원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으면서도 자의적으로 전북지역인재 25% 선발을 배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기학교이던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옮겨 놓음과 동시에 자사고 지원자는 후기학교 일반고에 이중 지원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전북을 비롯한 5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말 '설령 평준화 지역에 미달학교가 있더라도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은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는 배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권도 다르며 통학 자체가 어려운 비평준화 지역 미달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거나 어쩔 수 없이 재수를 감수 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간 서 명	이사장 홍성대	이사 신철순	이사 김성기

이처럼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는 경우 겪게 될 극심한 불안과 우려 때문에 특히 전북지역 학생들은 상산고 지원 자체를 기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25% 전북인재 할당은 채우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 25% 내외로 정한 전북인재 할당을 실행할 수 없겠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보내왔습니다. 원래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정할 학사문제 이지만 학교 설립 운영에 워낙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사회에 심의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학교법인 상산학원과 민족사관학원, 현대학원이 함께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행히도 지난달 말 ‘이중지원 금지 부분의 효력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극심했던 불이익은 조금이나마 해소된 상태입니다.

이 사 박삼옥 : 이번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 3월 말에 공고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 김성기 : 그렇다면 신입학 전형 중 25% 내외 지역인재선발의 건과 관련해서는 전북교육청이 공고하는 내용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 이현구 : 헌법재판소의 결정 못지않게 이에 따른 관할청의 기본계획 수정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이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 공고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이 사 전창후 : 이현구 이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철순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홍성대 : 전창후 이사의 동의와 신철순 이사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일동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그럼 제2호 안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정하여 공고하는지 그 내용을 보고 결정하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록 간서명을 위한 대표 3인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전창후 : 홍성대 이사장과 이현구 이사, 박삼옥 이사를 추천합니다.

이 사 김성기 : 전창후 이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철순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홍성대 : 김성기 이사의 동의와 신철순 이사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일동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그럼 위 3인이 대표로 간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78회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하다)

간 서 명	이사장	이사	이사

위 사실을 확인함.

2018년 7월 7일

이사장 홍성대

홍성대

이사 김성기

김성기

이사 박삼옥

박삼옥

이사 신철순

신철순

이사 이현구

이현구

이사 전창호

전창호